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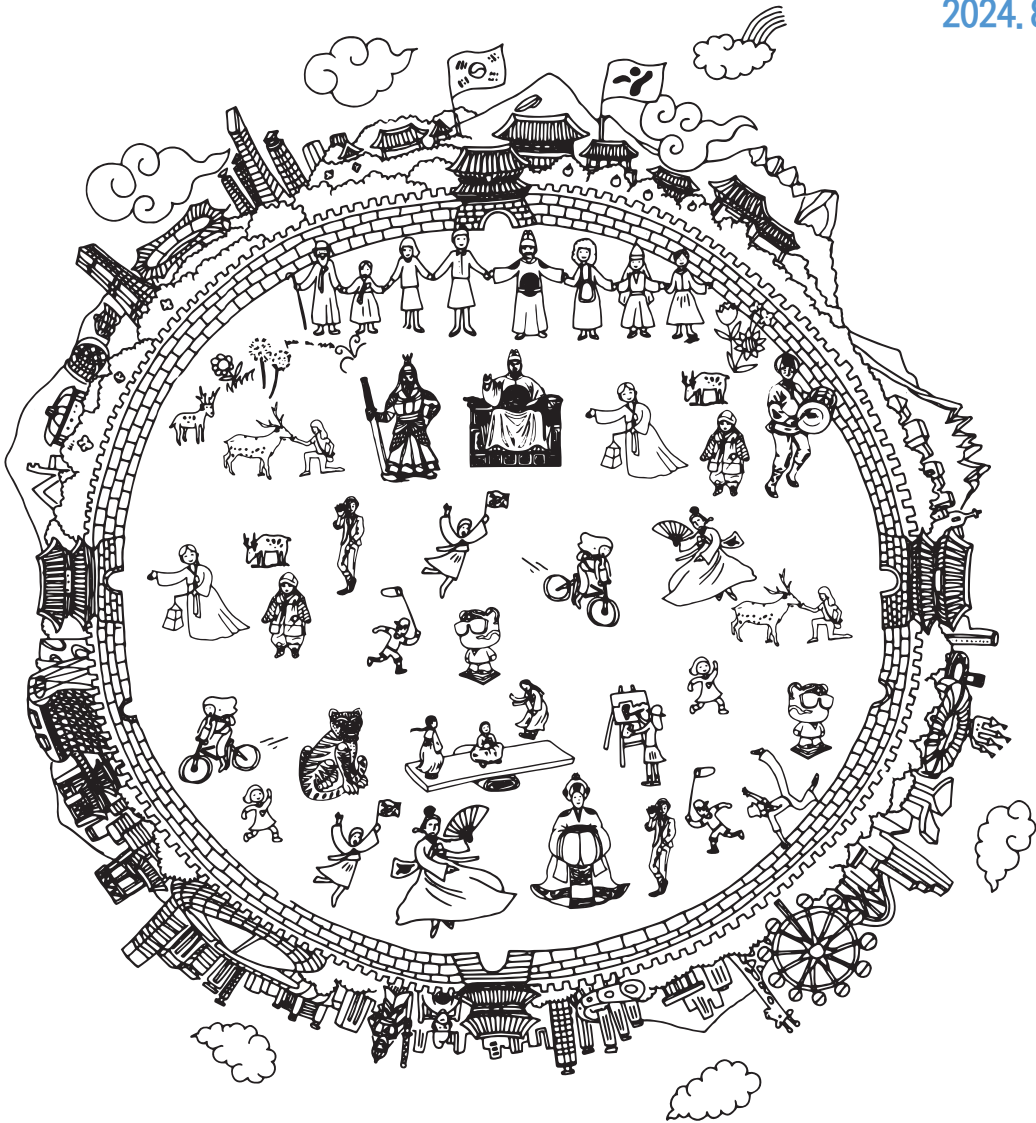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  
특별시 서울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

제3998호(그2)  
2024. 8. 8.(목)



**목 차****◆ 공 고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24-2271호 도시관리계획(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<br>재열람 공고 ..... | 2 |
| 제2024-231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|
| 제2024-231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|

## 공 고

### 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271호

#### 도시관리계획(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 재열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-3376호(2022.12.29.~2023.01.12.)로 열람공고한 용산공원 동측 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4.7.4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.

2024년 8월 8일  
서울특별시장

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

-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(☎02-2133-9448),  
용산구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42)

다. 열람내용 : 용산공원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신설)

| 구분 | 도 면 표시번호 | 구역명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| 변경           | 변경후       |    |
| 신설 | -        |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| 용산구 동·서빙고동, 용산동 6가 일대 | -     | 증) 212,581.2 | 212,581.2 | -  |

라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 및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도서로 같음)

- ※ 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 → 서울소식 → 공고 →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

마. 기타사항

-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,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(☎02-2133-944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315호

##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8일  
서울특별시

## 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| 구분    | 자치구  |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(k㎡) | 비고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합계    | 18개구 | 79개 법정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5.16 | 개발제한구역 |
| 서울특별시 | 종로구  | 구기동, 누상동, 무악동, 부암동, 삼청동, 홍지동 신영동, 옥인동, 청운동, 평창동 | 8.33   |        |
|       | 광진구  | 광장동, 구의동, 증곡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89   |        |
|       | 중랑구  | 망우동, 면목동, 신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64   |        |
|       | 성북구  | 성북동, 정릉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31   |        |
|       | 강북구  | 미아동, 수유동, 우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67  |        |
|       | 도봉구  | 도봉동, 방학동, 쌍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.20  |        |
|       | 노원구  | 공릉동, 상계동, 중계동, 하계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90  |        |
|       | 은평구  | 갈현동, 구산동, 녹번동, 불광동, 수색동, 신사동, 역촌동, 진관동          | 15.21  |        |
|       | 서대문구 | 홍은동, 홍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78   |        |
|       | 마포구  | 상암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8   |        |
|       | 양천구  | 신월동, 신정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99   |        |
|       | 강서구  | 가양동, 개화동, 공항동, 과해동, 마곡동, 방화동, 오곡동, 오쇠동, 외발산동    | 18.91  |        |
|       | 구로구  | 개봉동, 궁동, 오류동, 온수동, 천왕동, 향동                      | 3.43   |        |
|       | 금천구  | 시흥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69   |        |
|       | 관악구  | 남현동, 봉천동, 신림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28   |        |
|       | 서초구  | 내곡동, 방배동, 신원동, 염곡동, 우면동, 원지동                    | 5.95   |        |

| 구분 | 자치구 |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 (km <sup>2</sup> )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| 강남구 | 개포동, 세곡동, 수서동, 율현동, 일원동, 자곡동     | 2.74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| 강동구 | 강일동, 고덕동, 길동, 둔촌동, 명일동, 상일동, 암사동 | 8.16                  |    |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| 용 도 지 역 |      | 면 적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도시지역    | 주거지역 | 60㎡ 초과  |
|         | 상업지역 | 150㎡ 초과 |
|         | 공업지역 | 150㎡ 초과 |
|         | 녹지지역 | 100㎡ 초과 |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: 붙임1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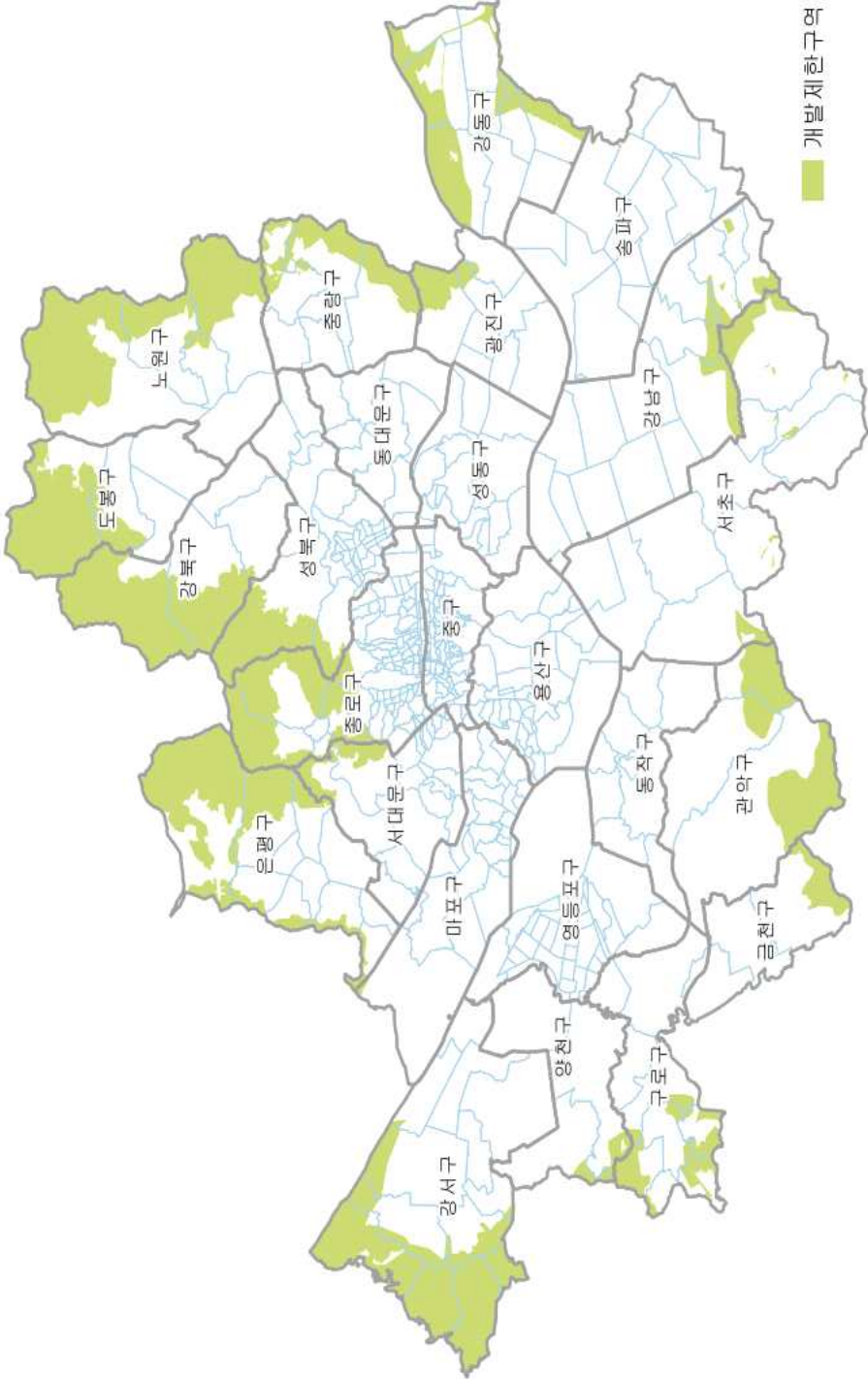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: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
붙임 2

(지정)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면(개발제한구역)



## 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316호

##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특별시공고 제 2024-1395호)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8일  
서울특별시

## 1. 허가구역 대상지역(변동없음)

| 구분    | 자치구 |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(k㎡)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합계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.29  |
| 서울특별시 | 강남구 | 수서동, 개포동, 세곡동, 율현동, 자곡동, 일원동, 대치동 일원      | 6.02   |
|       | 서초구 | 양재동, 우면동, 방배동, 내곡동, 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, 서초동 일원 | 21.27  |

## 2. 허가구역 지정기간(변동없음)

-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

## 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| 용도지역 |      | 면적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|      | 당초      | 변경      |
| 도시지역 | 주거지역 | 60㎡ 초과  | 60㎡ 초과  |
|      | 상업지역 | 150㎡ 초과 | 150㎡ 초과 |
|      | 공업지역 | 150㎡ 초과 | 150㎡ 초과 |
|      | 녹지지역 | 200㎡ 초과 | 100㎡ 초과 |

## 4. 허가구역 지형도 및 토지조서 :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

\*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

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기관의 장 |  |
| 선     |  |
| 람     |  |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